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8호 서식]

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

귀하

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여러차례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·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2조(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)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사업의 허가·인가·면허 및 등록을 취소(정지)하거나 갱신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귀하의 밀린 세금이 오는 **년 월 일**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니, 아래 체납액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정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체납액의 내용 -

(단위 : 원)

세목코드	관리번호	연도·기분	내 국 세	농어촌특별세
세 목 명	납부기한	계	교 육 세	가 산 금
합 계	건			

. . .

○○ 세 무 서 장 (인)

※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· 문의 전화 : ☎ ○○○○-○○○○ (담당 : ○○○)

210㎜×297㎜(백상지 70g/㎡)